

예산총칙

2009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0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41,344,008	13,240,320
일반회계	436,064,040	13,081,921
특별회계	5,279,968	158,399
기타특별회계	5,279,968	158,399
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	3,154,149	94,624
주택사업특별회계	185,480	5,564
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	816,766	24,503
사회진흥소득사업특별회계	559,558	16,787
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	564,015	16,920

제 2 조 200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 행위는 별첨 "채무부담 행위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 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649,734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로 간주처리 한다.